

# 질의회신 사례집 학습동아리

평생교육분야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평생교육시설

학습동아리명  
연결고리

## 학습동아리(연결고리) 평생교육 질의회신 사례

본 질의회신의 내용은 학습동아리 회원 간의 의견을 논의한 결과로 다양한 학원 업무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의견의 대립 등 다툼이 있을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논의 및 교육부의 유권해석과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의 의견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 「2024년 학원업무편람」을 적용하고 있다고 가정하며 향후 교육부의 유권해석, 법률의 개정 등은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 화장실이 학원 설립 예정 건물 외부에 존재하는 경우, 학원 설립 조건을 충족하는가?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시설기준) ①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시설(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조례 제5조에 따른다)은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하고, 층을 달리하거나 같은 층에서 분리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3조의 단위시설 기준을 따라야 하는바, 화장실이 건축물대장상 한 건물 내에 존재하지 않고, 외부(건축물대장 상 동일 건물 외)에 존재하는 경우 학원 설립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 교습소에서 성인 수강 가능 여부와 성인이 수강할 경우 교습비 단가 적용 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하면 “교습소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4호 규정에 의하면 “과외교습이라 함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교습소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과 성인을 동시에 교습(동시 교습인원 9인 이하인 경우)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성인이라 하더라도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재수생 등)인 경우에 한해 교습소의 교습대상이라고 판단되며, 이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습비 단가 기준을 적용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교습소에서 그 외 성인반을 별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은 학원법에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학원법 제15조의5(정보의 공개)에 따라 정보공개의 범위는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위치, 교습과정, 교습과목, 정원, 교습기간, 교습시간 및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공개의 범위는 8가지 사항(1.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2. 학원 또는 교습소의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 3. 교습과정, 4. 교습과목별 정원, 5. 교습과목별 교습기간 및 총교습시간, 6. 교습비 및 별표 1에 따른 항목별 기타경비, 7. 학원설립·운영자 명단, 강사명단, 8. 교습자 명단)이며,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는 법령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인과외교습자 표지부착은 경기도 학원 시행규칙 제14조의5(개인과외교습 표지의 부착)에 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와는 별개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학원 시설과 사무소 시설이 주출입구를 공유할 경우 학원 설립 기준을 충족하는가?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시설기준) 제3항 및 경기도교육청 「2024 학원업무편람」에 따르면 학원, 교습소는 사무실 등 다른 용도의 시설과 구별되어야 하고, 학원의 전용면적이란 주출입구로 들어가서 학원 용도로 쓰이는 휴게실, 교무실, 강의실, 학원 내부 복도 등 모든 시설면적의 합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용면적 내 하나의 주출입구를 공유하여 학원, 사무소로 각각 들어가는 구조일 경우 타용도의 시설과 구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용복도에서부터 주출입구를 분리하거나 주출입구에서 이어지는 내부복도를 세대내복도 또는 공용복도로 건축물 대장과 건축물현황도에 표시하여 다른 용도의 시설과 구별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전용면적에 신규 학원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프로농구선수가 농구교습소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교습자격을 충족하는가?

1989년 3월 31일 법률 제4106호로 제정된 체육시설법 부칙에 따른 타법 개정으로 구 사설강습소법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습과정에서 “체육”을 삭제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입법연혁에 비추어 볼 때 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습과정에 “체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체육 교과 중 하나인 “농구”도 같은 규정에 따른 교습과정에 포함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라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하나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시행하는 기능대회에서 입상한 실적) 또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등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프로농구선수는 학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원 강사 자격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경기도 학원 조례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4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05: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독서실은 제외하므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운영에 있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22:00까지의 교습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수강 중인 성인(재수생)의 경우 경기도 학원 조례 제14조에 따른 교습시간 준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8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독서실은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0조(학원 등의 교습시간)

-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 05:00부터 21:00까지, 중학생 05:00부터 23:00까지, 고등학생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 ② 제1항의 학교교과교습학원 중에서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00부터 다음날 04:00까지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보호자의 동행 또는 차량운행을 통한 안전귀가 시는 예외로 한다.

◆ 학원, 교습소 외부표식 관련

학원, 교습소의 명칭(외부표식)의 경우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간판 등으로 확인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제12조에 따라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므로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학원, 교습소의 외부표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 시 과태료 승계 여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정처분) 및 제23조(과태료)에 따라 행정처분은 학원(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부과되는 사항으로 인수받는 학원장이 승계하나 과태료는 학원장에게 부과되는 개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으로 학원을 인수받는 학원장에게 승계되는 사항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국제화 실용외국어 교습과정의 교습소 설립 가능 여부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어학(실용외국어: 토익, 토플, TEPS, 회화 등)을 교습할 경우 국제화 실용외국어로 등록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나, 실용외국어를 교습하여야 함에도 영어 보습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독서실 반환기준 중 법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의 해석

「학원법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제3항에 의거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서 독서실의 학습장소 사용 후 반환 금액의 계산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에서 법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로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를 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은 제18조제2항제1호,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와 다르므로, 실제 독서실에서 게시한 1일 교습비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다른 합의의 경우에는 학원 수강생에게 유리하게 합의된 경우에만 허용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2020.1.23.)

◆ 그 밖의 학원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2차위반 관련

시험지 유출 등 사회문제화 및 향응제공, 학원 시설이용 불법과외, 학원의 교습과정으로 등록할 수 없는 교습과정에 해당하는 교과목 교습, 교습비와 기타경비가 아닌 다른 비용 징수(교재비 징수) 등에 해당될 경우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제1항 관련)의 그 밖의 학원운영과 관련된 부조리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때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가 달라도 같은 위반사항 내 있는 행위를 위반할 경우 부과된 횟수를 확인하여 반복 횟수별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언론기관 본사 소재지 판단 기준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은 언론기관 본사 소재지의 관할 구역(혹은 지역) 내에서만 일정 요건을 갖추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언론기관에 해당되는 지는 관련 사업 등록증으로 확인하는바, 신문사업의 경우 신문사업등록증 내 발행소의 주소를 언론기관의 본사 소재지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경비(모의고사비, 재료비 등) 관련

입학전 레벨테스트비는 비용징수가 불가하나 수강중 테스트비는 징수 가능으로 판단됩니다. 허나 실비의 경우에 한해((예) 6월 모평, 9월 모평) 모의고사비로 징수가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학원에서 자체 제본한 책자 또는 프린트물 등 교습 보조자료 비용과 보충수업비, 논술 첨삭 지도비, 교습을 위한 테블릿PC 대여비 등의 비용은 교습행위의 한 부분으로 별도의 비용을 징수할 수 없고 교습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 개인과외교습자가 기타경비를 신고 등록할 수 있는가?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 등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하며,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하므로 실비 증명 자료(산출 내역서, 수강생명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입전표 등)를 첨부하여 기타경비(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평생교육시설 설치 시 유해업소 확인 관련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주된 교육 대상은 성인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 대상이 유아, 장애인, 초·중·고 학생인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에 따라 학교 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는 유해업소와 가까운 장소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 학원 강의실 내 세면대 설치 가능 여부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학원에는 학습자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보건위생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 강의실 내 세면대를 설치하더라도 이것이 보건위생에 필요한 설비라고 한다면 설치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설의 기준면적은 해당 시설의 내벽 간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하며, 기둥·불박이장·고정거치대 등 바닥에 고정되어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경우와 학습자의 교습과 관련되지 않은 물품이 놓여져 있는 경우 면적 산출에서 제외되므로 세면대 설치 공간만큼 강의실의 면적 산출에서는 제외됨을 안내드립니다.

◆ 외부철제계단도 직통계단에 해당하는가?

근린생활시설(학원, 독서실) 및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용도로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전용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학원 설립·운영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및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에서는 직통계단을 건축물의 각 층에서 직접 연결되는 피난용 계단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또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에 적합할 경우 직통계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외부철제계단도 직통계단의 조건을 충족할 시 직통계단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 건축물을 관리하는 시·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학원설립예정지 건물 동일층에 평생교육시설이 운영 중일 경우 직통계단의 적용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제2항 제4호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은 교습소와 동일하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해당하는바, 학원, 독서실, 노유자 시설 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구별됩니다. 따라서 해당 층 신규 학원의 전용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하여 해당 층의 전용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 유학(D-2) 체류자격 외국인의 학원 강사 가능 여부

유학자격(D-2) 소지 유학생이 학업을 계속하면서 시간제 아르바이트(S-3)를 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강사 채용시 등록 서류와 더불어 여권 내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인 또는 활동허가스티커, 활동허가서 등의 서류를 추가 확인하여 강사 등록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D-2비자 소지자의 학원 강사가 아닌 개인과외 교습행위는 그 행위의 장소, 대상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엄격 제한됨을 안내드립니다.

◆ 개인과외교습자의 학습자 주거지 표지 부착 관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0항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하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할 경우 학습자의 주거지에 표지를 부착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 외국인 강사 미검증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요건을 검증한 후 채용하여야 하며,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경우 무자격 강사·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에 대한 위반사항만 있으며, 자격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채용한 외국인 강사에 대하여 나중에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해 보니 자격을 갖춘 강사로 판명이 될 경우 무자격 강사임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격을 갖춘 강사인지 여부는 그 강사가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인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그러한 자격 서류를 어느 시점에 제출하는지에 따라 유자격, 무자격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외국인 강사 미검증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경기도 학원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 동호회의 학원 등록 대상 여부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따라서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함께 즐기는 사람의 모임인 동호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동호회를 운영함에 있어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하고 사실상 학원의 역할을 하여 무등록 학원으로 운영하였을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여 형사 고발 조치(징역형 또는 벌금형) 될 수 있습니다.

#### ◆ 태권도학원 및 요가, 필라테스 운영업의 학원법 적용 여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학원 및 교습소에 적용되는 관련 법이며, 체육시설업상의 체육도장업, 태권도학원 등은 학원법에 의한 교습 대상이 아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로 판단됩니다. 또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요가, 필라테스를 창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체육시설업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점, 영화상영관 등의 유해업소 해당 여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단란주점(식품접객업 중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유흥주점(식품접객업 중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의 경우 유해업소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및 기타 주점업(주점, 술집, 바(BAR) 등) 등의 경우 유해업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라이브카페에서 무대시설을 영업장 내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할 수 없고 공연자만 이용이 가능할 경우(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없음) 이 또한 유해업소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2008.03.21.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화상영관은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별 형태에서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제한상영관은 유해업소에 해당)

◆ 과태료 감면 및 자진납부 중복일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합니다. 이때 자진납부 감경과 개별법상의 과태료 감경 규정 또한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학원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를 하지 않았으나 감면 사유에 해당할 경우 50%의 감경을 받고, 그에 더하여 자진납부를 이유로 20%의 감경을 중복하여 받으면, 50만원인 과태료는 50% 감경으로 25만원이 되며, 자진납부로 20%의 중복 감경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감액된 금액은 20만원이 됩니다. 이를 의견제출 기간 내에 완납하면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종료됩니다.

◆ 인수전 인계한 학원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추후 발생될 행정처분 승계 여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정처분)에 따르면 행정처분은 학원(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부과되는 사항으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자를 변경하는 경우 인수자가 당해 학원의 모든 운영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인수전 인계한 학원장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추후 해당 학원에 발생 될 행정처분은 인수한 학원에 승계됩니다. 따라서 인수전 반드시 기존수강생 교습비등 환불 문제, 행정처분, 시설 등에 관한 것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보습학원 운영 중 진학지도 과정을 추가할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한 학원에서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통교과에 대한 교습과정과 진학상담·지도에 대한 교습과정을 별도의 교습과정으로 분리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례와 같이 한 학원에서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하는 경우(보습,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의 종합학원)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별표1]의 시설규모에 따른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하며, 보습 교습과정에 대한 강의실 60㎡ 이상과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에 대한 강의실을 60㎡ 이상을 확보하여야만 진학지도 교습과정을 추가, 종합학원으로 등록하여 운영하여 함을 안내드립니다.

◆ 건축물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일 경우 학원 설립 가능 여부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절차 없이 변경이 가능하여 건축물대장이 제때 변경되지 않아 기재된 건축물의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불일치하는 등 행정에 혼선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4항의 개정(2020. 1. 23. 시행)으로 관계 안전기준이 적용되었으며, 현행 「건축법」 제19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등 재난 발생시 피해 우려가 높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건축물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또는 소유자별(임대차인별) 면적에 따라 교육연구시설(학원), 교육연구및복지시설(학원) 등으로 변경하여야 학원 설립이 가능합니다.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동시 운영 가능 여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4조제10항, 제14조의2제9항에 따라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시 운영은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하며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하며,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실제 거주하여야 하므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동시 운영하더라도 2개소의 교습소, 2주거지에서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는 학원법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경기도 내 관할교육지원청 간의 학원, 평생교육시설 위치 변경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평생교육법」 상 관련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평생교육시설 관할 범위를 교육지원청으로 더 협소하게 한정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평생교육시설 위치 이전 신고 관련 필요한 서류 이관 요청, 이전에 따른 문서 이관 및 인수인계 작성 송부, 문서 이관 확인 및 확인서 송부, 나이스 처리 등의 절차를 통해 경기도 내 위치 변경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학원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관련 서류를 “교육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서 평생교육법과 차이가 있으며, 이에 관할교육지원청 외의 장소로 위치 변경 등록을 신청할 경우 기존 학원은 폐원 신고 및 이전하는 장소의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신규 설립으로 등록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학원법」 제22조를 위반하여 형사고발 조치된 사람의 학원 등록 가능 여부

학원 설립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여야 학원 설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등록학원 운영으로 경찰 고발 조치가 되었더라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 선고 전일 경우 학원 설립·운영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법 제2조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자가 동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게 되나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학원 등록이 효력을 잃는다는 규정은 현재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단순위헌, 2011헌바252, 2014.1. 2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07. 12. 21. 법률 제871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2항 본문 중 제9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학원, 교습소 배상책임보험의 기준 관련

경기도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원법」 제4조제3항 및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하며, 1인당 배상금액 1억5천만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의 기준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1사고당 배상금액은 대물이 아닌 대인으로 가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험이나 공제사업 등의 가입범위는 학원 및 교습소 내·외에서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등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하여야 하므로,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은 구내·외로 가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미용학원 설립 시 실습실 면적 및 과정별 설비 학원 내부복도 내 설치 가능 여부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및 [별표2]에 따라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에서는 기준에 따른 시설·설비 및 교구를 갖추어야 하며, 이용과 미용의 과정별 설비는 다르나, 시설(실습실)의 면적은 공통시설로 해석하여 각 실습실 60㎡ 이상, 즉 실습실 12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실습실 60㎡ 이상과 과정별 설비를 갖춘 경우 이·미용학원 설립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정별 설비(세면장 및 급수시설 등)는 실습에 필요한 설비이므로 학원의 내부 복도에 설치하는 것이 아닌 실습실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지 처분 중 행정처분 게시문을 식별하기 어려운 곳에 부착하거나 다른 물체로 가렸을 경우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별표4]와 달리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훼손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정처분 게시문을 부착하는 것은 학원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항으로 교습의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닌 게시문을 식별하기 어려운 장소에 부착하였거나 다른 물체로 가렸을 경우 우선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도록 게시문 부착 시정을 요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시정을 거부할 경우 지도감독 거부 또는 방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별표4]

| 구분   | 위반사항         |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  | 반복횟수별 벌점 |    |      |
|------|--------------|---------------------|----------|----|------|
|      |              |                     | 1차       | 2차 | 3차   |
| 제10호 |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 제거                  | 40       | 50 | 등록말소 |
|      |              | 기타<br>(다른 물체로 은폐 등) | 20       | 40 | 60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관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동법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의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건축물 용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학원, 교습소, 독서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교습소, 독서실)로의 건축물용도 변경 시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의 설치가 의무 사항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다만 건축물용도 변경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므로 학원, 교습소, 독서실의 용도가 아닐 경우 해당 용도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관해서는 관할 시·구청 건축과를 통해 확인함을 안내드립니다.

◆ 공용부분 위반(공용복도 무단 점유 등) 시 학원 설립 가능 여부

「건축법」 제79조의제2항 및 판례[대법원 1991.1.11 선고 90누3263 판결]에 따라 일반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경우 위반사항 해제 전에는 학원을 설립 할 수 없으며, 집합건축물의 건축물대장 공용부분에 '위법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경우 위반사항 해제 전에는 학원 설립 불가하고 전유부분에 '위법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경우 해당 전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학원 설립이 가능합니다.[법제처 해석례 안건번호 14-0210]

또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집합건축물의 공용 부분인 수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용부분은 그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처럼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지 아니하여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공용복도 등을 구분소유자가 무단으로 점유하여 학원 설립을 진행함은 건축법상 위법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공용복도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는 학원의 용도가 아닌 복도의 용도로 학원 설립 시의 건축물용도 역시 적합하지 않음을 안내 드립니다.

◆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질서행위규제법」 제13조 관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에서는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제1항), 수개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각 질서위반행위가 정하는 과태료를 각각 부과되 개별법령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외국인 강사를 채용한 경우 1건의 질서위반행위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의 행위는 행위 의사의 단일성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위반자가 동종의 질서위반 행위를 일정기간 주기적으로 반복한 경우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의무 위반자의 동일성 등을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질서위반행위의 개수를 판단해야 하고, 행위의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포괄하여 하나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경우, 동일한 사업주체가 연속되는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장소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로 다수의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면서 검증을 하지 않았으므로 행위의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비록 다수의 미검증 외국인 강사를 채용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포괄하여 1개의 규범적 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1건의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2022 참조]

◆ 평생직업교육학원과 평생교육시설(학교부설, 학교형태 제외)의 차이

평생직업교육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2, 제6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평생교육시설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하면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제30조~제38조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평생교육시설의 주된 학습대상은 성인인 반면,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성인과 학생이 취업을 목적으로 학습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경우 교습과정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평생직업교육학원 교습과정)에 적합하여야 하지만 평생교육시설은 보건·의료, 종교 관련 및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제한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주로 직업 능력 향상, 직업 관련 기술 교육에 중점을 두며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도 교습이 가능하지만, 평생교육시설은 직업 교육 외에도 다양한 개인적 성장과 취미 개발을 지원하며,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인을 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전문대학 3년제 졸업과정 중 2학년 수료일 경우 강사 자격 충족 여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학원강사 자격기준 2호에 따른 학원강사의 자격 기준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때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경우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을 한 학습과정을 이수하여 같은 법에 따라 일정한 학점(80학점 이상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경우에는 12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예정)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120학점 이상(전공 54학점 이상, 교양 21학점 이상 포함)을 이수한 경우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강사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학원강사 학력 제한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사설학원의 영리 추구와 결합한 자질 미달의 강사가 가져올 부실 교육 등의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여 교육소비자를 보호하며, 국가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학원강사의 학력 제한은 정당성이 있음.

◆ 교습비 미등록 시의 교습시등 초과징수에 해당하는 지 여부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제1항 관련)에서 “교습비등 변경 미신고”의 경우 교습비 등 변경 결정 후,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경우와 학원(교습소) 등록 후 교습비 등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교습비등 초과 징수”의 경우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교습비 등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할 것으로 학원(교습소) 등록 후 교습비 등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였을 경우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교습비등이 존재하지 않기에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에는 해당되나, 교습비등 초과 징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